



**사업주가
꼭 알아야 할
안전보건의무**
— 서비스업 —

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



※ 본 리플릿은 모든 법적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,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
잠깐!

☑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외식업 또는 편의점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?

[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]

- 가맹점의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, 시행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
-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, 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보건정보 제공

※ 가맹점의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·시행하지 않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보건정보 미제공 3,000만원 이하 과태료



→ 가맹점의 안전보건프로그램이란?

- ①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
- ② 가맹본부의 프로그램 운영 조직 구성, 역할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체계
- ③ 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가맹점 안전보건매뉴얼
- ④ 가맹점의 재해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조치사항

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? [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]

→ 휴게시설 구비, 넘어짐·미끄러짐 방지조치, 기상악화 시 작업중지,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응지침 제공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

[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] ※ 위반 시 1,000만원 이하 과태료

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? [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]

→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

[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, 제673조] ※ 위반 시 1,000만원 이하 과태료

-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승차용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
→ 승차용 안전모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
- 「도로교통법」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*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
*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금지,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함
- 전조등, 제동등, 후미등, 후사경,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가 탑승하도록 하여야 함

! 물건의 수거, 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하면 안됨

서비스업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



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등 [산업안전보건법 제15~18조, 제62조]

구분	선임 대상	관련 근거
안전보건관리책임자 (법 제15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※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적용 업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, 컴퓨터 프로그래밍·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, 정보서비스업, 금융 및 보험업, 임대업(부동산 제외)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연구개발업 제외), 사업지원 서비스업, 사회복지 서비스업 	시행령 별표2
안전보건총괄책임자 (법 제62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(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지정) 	시행령 제52조
관리감독자 (법 제16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시근로자 5명 이상 	시행령 별표1
안전관리자 (법 제17조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,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(부동산업과 사진처리업은 100명 이상 1,000명 미만) 상시근로자 1,0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선임 	시행령 별표3,4
보건관리자 (법 제18조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,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선임 (사진처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,000명 미만) 상시근로자 5,0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선임 	시행령 별표5,6

※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·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/ 직무교육은 [시행규칙 별표4] 참조

0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[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]

- 사업주**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**산업안전보건위원회**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
 - ※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
 - 단, 산업안전보건법령, 단체협약, 취업규칙,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·의결해서는 안됨
- 대상**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아래 업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
 - ※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, 컴퓨터 프로그래밍·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, 정보서비스업, 금융 및 보험업, 임대업(부동산 제외)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연구개발업 제외), 사업지원 서비스업,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[시행령 별표9] 참조

0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[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]

-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서비스업 사업주**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**안전보건관리규정**을 작성하여야 함
 - ※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/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적용 업종은 [시행규칙 별표2] 참조



안전보건
관리규정 이람?

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



01 안전보건교육 실시 [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, 제77조]

교육과정	교육시간	관련 근거
정기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무직·판매직 매분기 3시간 이상, 그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	시행규칙 별표4
채용 시 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8시간 이상 (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) 	
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시간 이상 (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) 	
특별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6시간 이상(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,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) ※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	

※ 정기·채용·변경 시 교육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, 특별교육의무 위반 시 3,000만원 이하 과태료

▶ 잠깐!

- 골프장 캐디, 택배원, 퀵 배달기사, 대리운전기사(특수형태근로종사자)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 받을 때는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[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, 시행규칙 별표5]
-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에 ‘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’ 포함 (2021.1.19.시행) [시행규칙 별표 5]

02 보호구의 지급 등 [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, 제33조]

- 사업주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보호구를 지급·착용하도록 하여야하며, 상시 점검하여 수리하거나 교환해주는 등 관리하여야 함

03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 보호조치 [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]

-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*에 대하여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[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]

*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

①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[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]

※ 위반 시 1,000만원 이하 과태료

②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[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]

▶ 잠깐!

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‘고객응대근로자’뿐 아니라 ‘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’에 대하여 사업주가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함 (2021.10.14. 시행)

- 근로자가 해당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

※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, 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

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

✔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
✔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

✔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
✔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

※ 세부사항 [시행규칙 별표3] 참조



안전한 현장을 위한 업종별 안전보건조치



음식업



옥내바닥에 미끄러짐

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, 물청소 시 미끄럼 주의 표지 설치

칼 등 절단용 수공구에 절단·베임·찔림

베임 방지 장갑 착용, 수공구 사용법 교육

배달대행서비스



배달 등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

승차용 안전모 착용, 이륜차 운행 전 제동등, 전조등, 후미등, 제동장치 등 점검 및 교통법규 준수 교육

위생서비스업



이동 중 넘어짐

바닥 상태를 확인하며 이동하고, 주변 차량 확인

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중 교통사고

도로변 청소작업 시 주변 이동차량 확인

건물 청소 및 방제작업 시 화학물질 노출

작업에 맞는 보호구(안전장갑, 마스크 등) 착용

건물관리업



계단 등 이동 시 넘어짐

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, 바닥에 미끄럼 방지 조치

주차설비에 끼임

가동 중인 주차설비 내 접근금지, 정비 시 작동정지 및 잠금장치 설치, 작업지휘자 배치 후 작업

전자작업(나무 가지치기), 수리작업 등 이동식사다리 사용 중 넘어짐

안전한 사다리 사용, 안전모·안전대 착용 및 2인 1조 작업 실시

※ 안전대는 발 딛는 디딤대 높이 2m 이상인 경우 착용

도소매업



바닥통로 이동 중 넘어짐

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, 바닥에 미끄럼 방지 조치

사다리 사용 중 떨어짐

안전모, 안전대 착용 및 2인 1조 작업 실시

※ 안전대는 발 딛는 디딤대 높이 2m 이상인 경우 착용

물품운반기계(컨베이어 등) 사용중 끼임

수리 및 정비 시 전원 차단, 비상정지버튼 사전 확인

보건복지업



바닥통로 이동 중 넘어짐

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, 바닥에 미끄럼 방지 조치

무리한 동작(환자 이송)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담

인력보조기구 사용, 가급적 2인 1조 작업

의료기구, 가검물 등 노출에 의한 감염

주사침 사용 시 찔림주의 및 전용용기에 폐기, 장갑·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·착용

교육서비스업



급식실 등 바닥에 미끄러짐

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, 물청소 시 미끄럼 주의 표지 설치

칼 등 절단용 수공구에 절단·베임·찔림

베임 방지 장갑 착용, 수공구 사용법 교육

무리한 동작(원아 돌봄)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담

가급적 2인 1조 작업, 탑승보조 등 돌봄 시 올바른 자세

운수·창고·통신업



화물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

운행 전 충분한 휴식으로 졸음운전 예방 및 차량 점검, 운행 중 교통법규 준수 및 과적운행 금지

지게차, 특장차 등에 의한 부딪힘

운전자 시야 확보, 유도자 배치, 작업 전 차량 점검 및 작업계획서 작성





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

● 산업재해 발생보고 [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]

- 산업재해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,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(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)하여야 함
 - ※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, 1,500만원 이하 과태료

● 산업재해 발생기록 보존 [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]

-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-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
-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- 재해 재발방지 계획
- ※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약 신청서 사본(재해 재발방지 계획 첨부)으로 대체 가능

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[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]

-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,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,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 - ※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 벌금 /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3,000만원 이하 과태료

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처벌



산업안전보건법

-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-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 -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의 1/2까지 가중처벌
 - 유죄판결(선고유예 제외) 선고받거나 약식명령 고지 시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음
 - 근로자 사망 시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

중대재해처벌법

-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‘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’
 - 사망자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/ 부상 또는 질병자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-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‘법인이나 기관 등’
 - 사망자 발생 50억원 이하의 벌금 / 부상 또는 질병자 발생 10억원 이하의 벌금

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기

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(2022.1.27.)
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-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(2024.1.27.)



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시면
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



고용노동부

산업경제연구원

안전보건공단

